M - 142 - 2012

고압 금속 다이캐스팅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 종 권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

○ 제·개정경과

- 2009년 9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
- 2009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
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 - The European Standard EN 869:1988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8절 제121조 (사출성형 기 등의 방호장치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고압 금속 다이캐스팅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1장 제8절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)의 규정에 따라 고압다이캐스팅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고압 다이캐스팅기의 관련 작업 등에 적용한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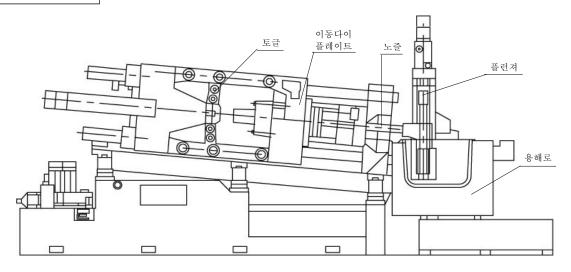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"다이캐스팅(Diecasting)"이란 용융된 금속을 형틀 안으로 사출하고,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고압 상태로 유지하는 공정을 말한다.
- (나) "다이캐스팅기(Diecasting machine)"란 용융된 금속에 압력을 가하여 기계의 플레이트에 부착된 분할 형틀 안으로 사출하는 전동기계를 말한다.
- (다) "다이캐스팅 장비(Diecasting unit)"란 한 개의 제품 단위를 이루는 보조 장치와 다이캐스팅기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.
- (라) "보조 장치(Ancillary equipment)"란 다이캐스팅기에 금속 주입, 주물 제거, 형틀분사와 같은 부가적인 공정 단계를 수행하는 자동장치를 말한다.
- (마) "금속(Metal)"이란 주조에 사용되는 금속을 말한다.
- (바) "고온 챔버 다이캐스팅기(Hot-chamber diecasting machine)"란 샷 슬리브 및 플런저가 보온 노 내의 용융 금속면보다 밑에 있는 다이캐스팅기를

M - 142 - 2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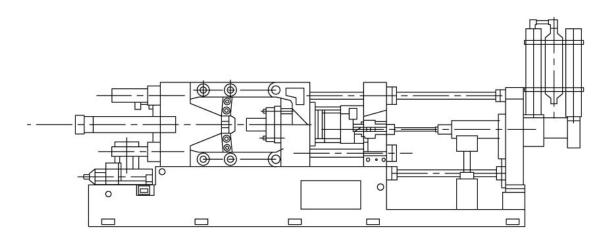
말하며 그림 1과 같다.

- (사) "저온 챔버 다이캐스팅기(Cold-chamber diecasting machine)"란 용융 금속이 별도의 보온 노에서 측정된 양만큼 샷 슬리브로 보내지는 다이캐스팅기를 말한다.
- (아) "수평저온 챔버 다이캐스팅기(Horizontal cold-chamber diecasting machine)"란 샷 슬리브가 수평으로 장착된 저온 챔버 다이캐스팅 기를 말하며 그림 2와 같다.
- (자) "수직저온 챔버 다이캐스팅기(Vertical cold-chamber diecasting machine)"란 샷 슬리브가 수직으로 장착된 저온 챔버 다이캐스팅 기를 말하며 그림 3과 같다.
- (차) "고정 플레이튼(Fixed platen)"이란 고정된 형틀 반쪽과 금속 사출 시스템이 부착된 플레이튼을 말한다.
- (카) "이동 플레이튼(Moving platen)"이란 움직이는 형틀 반쪽이 부착되는 플레이튼을 말한다.
- (타) "샷 슬리브(Shot sleeve)"란 내부에서 용융 금속에 압력이 가하여 지는 원통형 용기를 말한다.
- (파) "플런저(Plunger)"란 샷 슬리브에서 형틀로 용융금속에 힘을 가하고 응고 중에 압력을 가하는 피스톤을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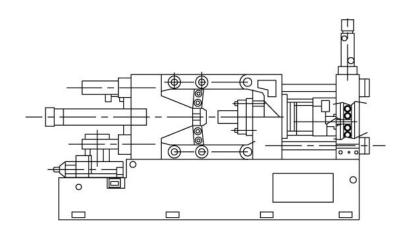
KOSHA GUIDE M - 142 - 2012



<그림 1> 고온 챔버 다이캐스팅기



<그림 2> 수평 저온 챔버 다이캐스팅기



<그림 3>수직 저온 챔버 다이캐스팅기

M - 142 - 2012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 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4. 위험요인

### 4.1 일반사항

다이캐스팅기의 위험요인은 작업자의 위험 동작(압착 또는 끼임), 위험 방출물질(열 방출, 금속 분무 및 튐, 분사 압력 유체) 또는 소음, 가스, 증기, 전기 등에 의한 것이다.

#### 4.2 기계적 위험요인

- (1) 다이캐스팅기 및 그 보조 장치의 기계적 위험요인은 기계설비자체에 의한 위험(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힐 위험) 및 위험 동작(압착, 끼임)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, 위험 동작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.
  - (가) 다이의 동작
  - (나) 코어 풀러의 동작
  - (다) 이젝터의 동작
  - (라) 보조 장치의 동작
  - (마) 사출 시스템의 동작
  - (바) 가드의 동작
  - (사) 토글, 다이 클램핑 장치, 쐐기의 동작
- (아) 공구 고정 장치의 동작
- (2) 가압 유체가 들어있는 저장실, 파이프라인, 호스의 파열 위험요인이 있다.

#### 4.3 전기 및 제어 시스템 위험요인

(1) 다이캐스팅기의 전기적 위험요인은 다음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.

M - 142 - 2012

- (가)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전기 접촉
- (나) 전기 장비에 의한 영향
- (2) 예상치 못한 기계 고장 또는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, 전자 제어 시스템 및 유압 또는 공압 제어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다.

# 4.4 열적 및 폭발 위험요인

- (1) 다이캐스팅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열적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다.
  - (가) 다이의 분리선 밖으로, 샷 슬리브 및 플런저 사이에서, 노즐과 다이 사이에서 용융 금속의 분사 또는 넘침
  - (나) 슬래그 터짐
  - (다) 공정상 가열된 기계의 구조부와 접촉
  - (라) 가공 물질 또는 도구를 가열하는데 사용되는 보조 장치와 접촉
  - (마) 고온의 작동 유체가 유출
  - (사) 용융로 또는 용해로에서 방출되는 열
- (2) 다이캐스팅 작업에서는 용해로 등에 물 등이 유입되어 수증기 폭발이나 마그네슘 등 첨가물이 이상현상 또는 혼합금지물질 등과 접촉 등으로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다.

# 4.5 화재 위험요인

화재 위험요인은 배관 파열시 용융금속, 가열장치, 고온부위 및 가연성 물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다.

KOSHA GUIDE M - 142 - 2012

#### 4.6 추락 등

작업자가 정상적인 작업 중이거나 유지, 보수 작업 등을 위하여 지면보다 높은 곳에서 또는 기계 위에서 작업하고 있을 경우, 다이캐스팅기에서 추락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.

#### 4.7 소음 위험요인

- (1) 다이캐스팅 기계에서 다음과 같은 소음 발생원이 있을 수 있다.
- (가) 주조 공정
- (나) 기계의 움직이는 부품 및 이러한 부품의 동력원
- (다) 기계를 설치한 방법
- (라) 다이 분사
- 4.8 가스, 증기, 흄, 분진에 의한 위험요인

다이캐스팅기에서 윤활제 사용, 방출제 사용, 특정종류의 금속(납합금 등) 및 청소 중에 위험 가스, 증기, 흄에 의한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.

- 4.9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요인
  - (1) 다이캐스팅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, 주물을 수작업으로 제거 시, 무거운 하중을 부적절하게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통 또는 반복동작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.
  - (2)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한 요통 등이 발생 할 수 있다.
  - (가) 작업 패널의 높이가 부적절

#### M - 142 - 2012

- (나) 작업 패널의 위치가 부적절
- (다) 설치의 방법 및 유지관리의 부적절

# 5. 안전 작업을 위한 방호장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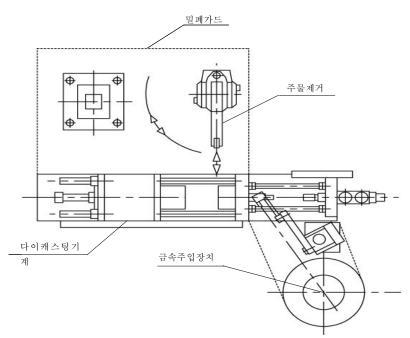
### 5.1 일반사항

- (1) 다이캐스팅기를 설계할 때에는 위험요인에 따른 방호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(2) 보조 장치가 다이캐스팅기와 일체형이 아닌 경우, 다이캐스팅 기계의 설계자, 제조자, 공급자는 보조 장치를 다이캐스팅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(3) 설계상 위험요인을 없앨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이캐스팅기나 그 주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안전장치(안전방책, 연동제어장 치, 절차서)가 요구된다.

#### 5.2 기계적 안전조치

- (1) 다이캐스팅기의 안전장치는 기계 자체의 위험요인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, 가드형 동력 조작식인 경우, 가드사이의 틈(Trap)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자가 위험공간에 있는 경우라도 앞쪽 모서리에 안전 트립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 트립 장치가 작동하면 움직이는 가드가 운동을 멈추거나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가드가 닫힐 때 가드와 기계 프레임 사이에 사람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움직이는 가드에서 그 가드와 기계 프레임 사이의 거리가 가드 전체 길이의 1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, 가드 자체의 구성물에 의하여 작업자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.

- (5) 가드가 움직이거나 점검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만 작업을 하여야 하며, 다이를 보호하는 가드가 열리면 그 즉시 다이가 동작을 멈춰야 한다.
- (6) 주조 공정은 다이를 위한 움직이는 가드 또는 점검문이 닫혀 있고, 다이가 밀폐되어 있거나 잠겨있을 경우에만 진행되어야 한다.
- (7) 유압식 밀폐 작동기가 있는 기계의 경우, 밀폐 실린더가 작동하고 있는 중에도 다이 밀폐 동작이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이가 적절히 단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8) 다이캐스팅기, 로봇 장비와 같은 보조 장비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움직이는 가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<그림 4>와 같이 밀폐 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4> 다이캐스팅기의 밀폐가드

- (9) 밀폐가드 내에 비상 정지 장치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(가) 밀폐가드의 점검문은 안으로 열리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
- (나) 이 문은 두 개의 기계적 리밋 스위치로 다이캐스팅기 및 그 보조 장치의 제어 장치와 연결하여야 한다.
- (다) 리밋 스위치는 점검문이 닫혀 있고, 장치 시작 명령(리셋에 의한 재가동) 이 작동된 후에만 다이캐스팅기 및 그 보조 장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 하여야 한다.
- (라) 재 가동장치는 밀폐가드 밖에서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위험 구역 밖의 문 근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마) 리밋 스위치의 신호는 안전 측면에서 다이캐스팅기 및 그 보조 장치의 전자 제어 시스템과 독립적이어야 한다.

# 5.3 전기 및 제어 시스템에 관한 안전조치

- (1) 전기 리밋 스위치를 이용하여 유압밸브 등을 작동시키는 경우, 리밋스위치 신호가 안전 측면에서 전기 및 전자 기계 제어 시스템과 독립적이어야 한 다. 리밋 스위치의 전기 시스템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.
  - (가) 전기/전자 제어 시스템의 케이블과 별도이고, 독립적인 전기 케이블로 리 및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.
- (나) 유압 보조 밸브와 배선 연결되고, 그 밸브에 직접 작용하여야 한다.
- (2) 전기 리밋 스위치의 기능은 리밋 스위치에서 발생한 고장이 자동으로 감지되어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도록 기계의 각 사이클 또는 최소한 움직이는 가드의 각 사이클에서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, 모니터링 회로에 대한 다음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.
- (가) 리밋 스위치 신호의 정확한 논리적 연관성 여부가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.
- (나) 움직이는 가드의 각 사이클에서 리밋 스위치의 스위칭 위치의 변화가

M - 142 - 2012

모니터링 되어야 한다.

- (다) 가드 스위치의 반대 신호가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.
- (라) 제어 회로의 동작 신호가 발생하여야 한다.
- (마) 모니터링 회로는 보조 유압 밸브를 위한 제어 신호를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3) 다이의 위험한 동작에 영향을 주는 다이캐스팅기 제어 시스템의 부품과 연결되고,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 장치의 제어 시스템 부품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항상 안전 기능이 실행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(4) 위험 동작이 다른 보호 장치(전자 반응 보호 장치 등)와 연동되어 있는 경우, 가드가 열려 있을 때에만 보조 장치의 동작이 허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 5.4 열적 및 폭발예방 안전조치

- (1) 고정 및 이동가드, 밀폐가드는 용융물 등 고온의 분사 금속으로 인한 작업 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2) 다이캐스팅 작업과 관련된 용해로 등에 물 등이 유입되어 수증기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마그네슘 등 첨가물이 혼합금지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폭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.

#### 5.5 화재 등에 대한 안전조치

- (1) 다이캐스팅 장비의 유압 시스템은 내화성 유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여야 한다. 파이프라인은 예상되는 기계적, 열적 하중을 견디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계적 또는 열적 파손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(2) 가압 가연성 방출물질을 사용할 경우, 파이프가 파손되었을 때 유체가 분사

#### M - 142 - 2012

되는 것을 자동으로 막는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적절한 조치의 예로는 펌프 차단 장치 및 라인 파손 안전장치가 있다.

- (3) 열 교환기를 위한 연결 조인트 및 파이프라인은 열 교환기 매개물이 누출되더라도 발화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움직이는 부분(문 등)의 개폐는 사람이 가까이 가는 경우 갑작스런 추락이나 전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.
- (5) 고정힌지, 고정점, 지지부와 장착은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이 보증되어야 한다.

#### 5.6 추락재해 예방

정상적인 운전, 셋업, 유지관리 중에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작업 플랫폼과 접근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5.7 소음에 대한 조치

- (1) 다이캐스팅기에 대한 소음대책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.
  - (가) 펌프는 저소음 펌프를 선택한다.
  - (나) 불필요한 공압 에너지의 방출을 막아야 한다. 소음기 또는 배기 필터의 사용을 고려한다.
  - (다) 울려서 소음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에 소음을 줄이도록 특별히 설계된 체결 장치를 사용하여 안정화시킨다.
  - (라) 소음을 줄이기 위한 보강판 또는 소음 감쇠 재료를 설치하여 패널의 진동을 예방한다.
  - (마) 실행 가능하다면 소음 발생 장비를 작업자가 위치하는 구역과 멀리 떨어 진 곳에 설치한다.

# KOSHA GUIDE M - 142 - 2012

(바) 소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품의 소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의 사용을 권장한다.

# 5.8 가스, 증기, 흄, 분진 등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

가스, 증기, 흄, 분진으로 인한 위험은 처리하는 재료(알루미늄, 아연 등)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적절한 유해·위험방지 조치가 요구된다.

## 5.9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

- (1) 반자동 작동 다이캐스팅기의 수동 조작은 인체공학 원리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.
- (2) 다이캐스팅기는 셋업 및 유지관리 작업을 적절한 자세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 작업의 특성에 따른 리프팅 장비, 금속 주입 장치, 주물 제거 장치의 적합한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.

# 6. 사용정보 및 설명서

#### 6.1 정보표시

다음의 정보를 잘 알아볼 수 있고, 지워지지 않도록 다이캐스팅기에 표시하여야한다.

- (1) 제조자 이름과 주소
- (2)시리즈 명칭 또는 형식
- (3) 규제 필수 내용 표시

M - 142 - 2012

- (4) 일련기계 번호
- (5) 제작년도
- (6) 공칭 체결력
- (7) 무게
- (8) 전기 특성

#### 6.2 사용 설명서

- (1) 제조자는 모든 보조 시스템을 포함해 각 기계마다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, 설명서에는 다이캐스팅기의 고유한 특성과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(2) 유지관리 설명서에는 위험요인에 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표시해야 하는 시험에 관한 지침, 유지관리 및 수리 작업을 위한 지침을 설명하여야 한다.
- (3) 또한, 유지관리 설명서에는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인 점검 계획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. 이러한 안전 점검의 주기는 신뢰도와 장치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규정하여야 하며, 운전 과정 중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